

퇴거 시 부담 구분(예시)

퇴거 시의 주택 손모 등 복구(원상복구)

1.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 등의 복구 비용은 UR도시기구(기구)가 부담하며 여러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고의·과실이나 통상적 사용 방법에 반하는 사용 등 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모 등의 복구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합니다.

다다미

고객 부담

- 담배에 눌은 자국
- 중량물 등으로 인한 다다미 바닥의 현저한 변형
- 가구를 끌어서 생긴 흠집

기구 부담

- 통상적 사용에 따른 다다미 걸자리의 마모
- 햇볕에 의한 변색

맹장지

고객 부담

- 맹장지 종이의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
(손잡이 주변의 손때 오염은 제외)
- 맹장지 종이 파손

벽면(직물 벽지)

고객 부담

- 흠집 · 찢어짐
- 크레용, 매직 등을 이용한 낙서
- 담뱃진 등에 의한 황변이나 냄새

기구 부담

- TV의 방열 자국(전기 화상)
- 포스터 자국(일광 화상)

마루

고객 부담

- 담배에 눌은 자국, 잉크 등의 얼룩

에어컨용 슬리브

고객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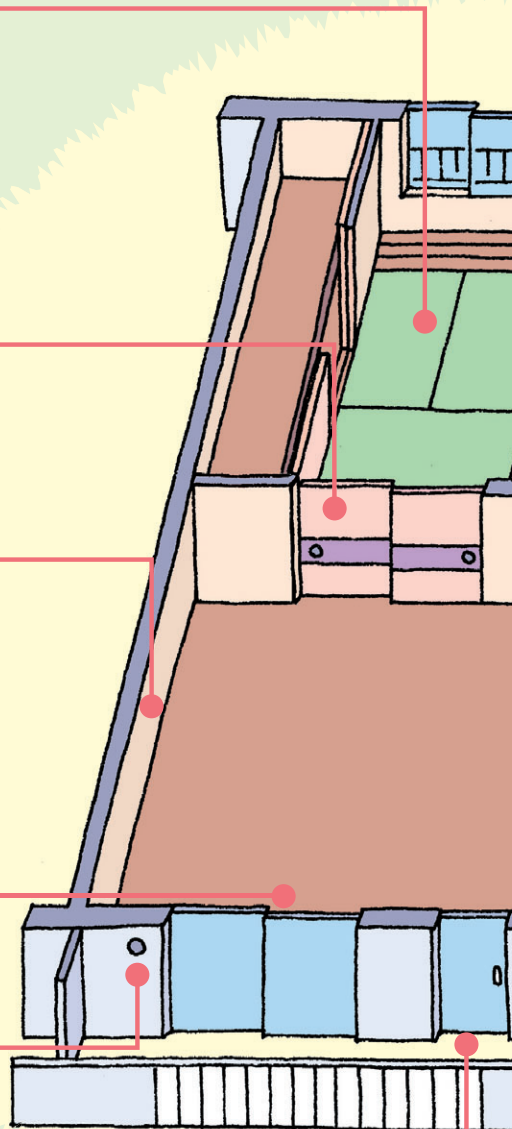
- 에어컨용 슬리브 캡 분실
- 에어컨 · 난방기(기구에서 설치) 리모컨 분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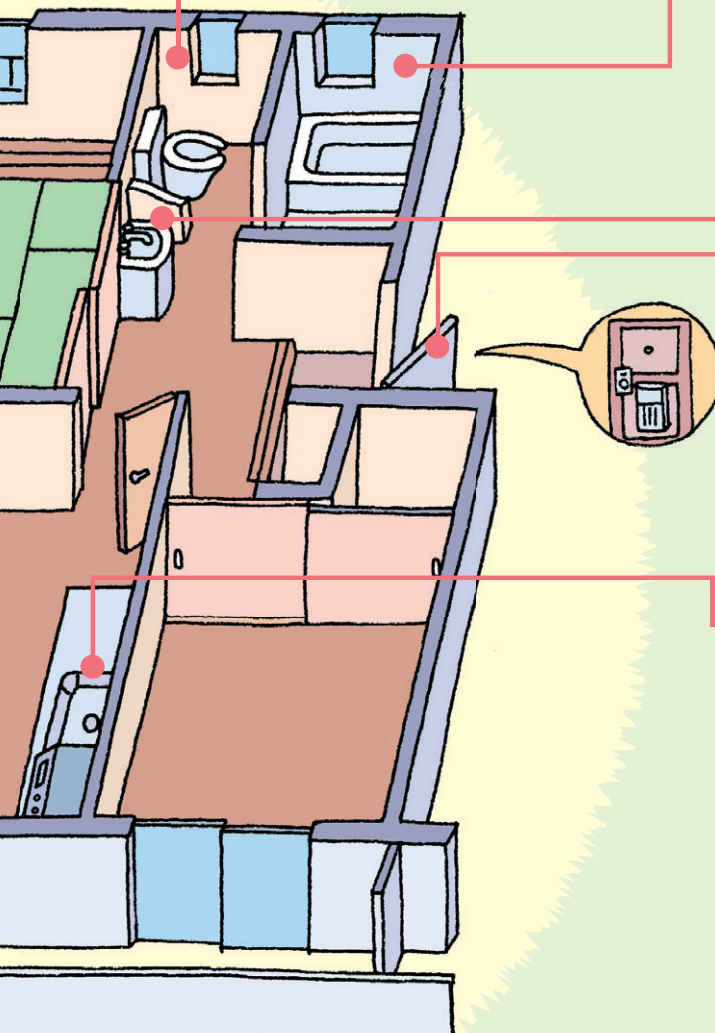
발코니

고객 부담

-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

- 위 내용은 퇴거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부담 구분으로서 거주 중에 수선이 필요해진 경우의 수선 부담 구분과 다릅니다.
- 거주 기간 중의 수선 부담 구분에 대해서는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





화장실

고객 부담

- 변기 파손,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
- 변좌 및 기타 부품의 파손, 멸실

기구 부담

- 변기 설치 나사, 지수전의 녹

욕실

고객 부담

- [벽·바닥] •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 · 곰팡이
- [욕 조] • 체인, 마개, 기타 부품의 파손, 멸실
-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

세면대

고객 부담

- 세면기 파손,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
- 체인, 마개, 기타 부품의 파손, 멸실

기구 부담

- 수전, 지수전의 녹, 도금 벗겨짐

현관문

고객 부담

- 우편함 찌그러짐
- 열쇠 분실

기구 부담

- 본체나 철물의 녹
- 헐거워진 경첩

주방

고객 부담

- [벽] •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기름때
- [싱크대] • 레인지대의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기름때
- 손잡이, 기타 부품의 파손, 멸실
- [환풍기] • 레인지 팬, 기타 부품의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기름때

기구 부담

- [벽] • 냉장고의 방열 자국(전기 화상)

전용 정원

고객 부담

- 입주 시 없었던 시설과 식물(자연적으로 생겨난 수목 포함)의 철거 · 처분
-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

● 평상시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이란?

먼지 털기, 쓸기, 걸레질, 물을 쓰는 곳이나 환풍기 및 레인지 주변의 기름때 제거 등, 평상시 청소를 소홀히 하여 생긴 오손을 말합니다.